



한국학 제48권 제3호 통권 180호 296~334쪽  
doi: 10.25024/ksq.48.3.202509.296

연구논문

# 조선 초기 국가제사용 제기(祭器)제도의 설계 과정과 성격

구혜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미술사 전공

human180@daum.net

---

## I. 서론

II. 태종 대 제기제도 설계: 의례상정소와 허조의 『제사서례도』

III. 조선 초기 국가전례서 제기도설에 인용된 중국에서

IV. 『소희주현석전의도』와 『에서』의 제기 조합: 문묘례와 왕조례의 조화

## V. 결론

---

## I. 서론

---

유교를 국시(國是)로 삼은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고려식 불교의례나 도교의례를 제거하고 유교식 제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선의 유교식 제사는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의 위계적 사전체계로 운영되었고, 그중 가장 중시된 제사 공간은 종묘와 사직이었다.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은 종묘제향의 중요성에 대해 “王者는 천명을 받아 개국을 하고 나면 반드시 종묘를 세워서 조상을 받드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의 근본에 보답하고 먼 조상을 추모하는 것이니, 후한 도리이다. … 제사에 쓰는 희생과 폐백의 수량, 보궤·변두 등 제기의 품질, 그리고 관헌·배축하는 예절 등을 자세히 강구하여 책에 기록해 두었다. 예조는 필요할 때마다 청하여 거행하고, 모든 관부는 분주하게 자기의 직책을 경건한 마음으로 수행하지 않음이 없으니 공경의 지극함이다.”라고 했다.<sup>1</sup> 이처럼 정성스러운 제사는 보본추원(報本追遠)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제사를 거행하기 위한 갖가지 물질을 갖추었을 때 완성된다. 공간, 제복, 제물, 제기, 의장 등을 마련하는 일은 제사를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사전체계를 세우는 과업과 함께 제기제도(종류·형태·크기·문양·진설 방식 등)를 서둘러 마련하고자 했다. 조선시대 국가제사용 제기의 구성은 고려시대부터 유전된 것도 아니고, 명나라에서부터 사여 받은 것도 아니었다. 조선 초기 예학자들이 다양한 측면(정치·사상·외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한 결과물이며, 조선시대 내내 운영된 시스템이

---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대형기획총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4-KSS-1120009).

1 鄭道傳, 『三峯集』, 「朝鮮經國典」上 禮典 宗廟.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에서 제공하는 국역문을 인용했으며, 이하 원문의 국역문 출처도 모두 동일함.

었다.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에서 조선은 주변 국가들과 다른 제기제도를 정립했고, 종묘제기의 경우 조선 초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500년 넘게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가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제기제도가 마련된 조선 초기에 집중해, 국가제사용 제기제도가 설계된 배경과 정립 과정을 파악하고 그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동안 조선시대 국가제사용 제기에 관한 학술 연구들은 미술사학, 역사학, 종교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우선 미술사학계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제기의 기종, 재질, 조형, 문양, 제작과 사용 방식, 국가전례서 제기도설, 제기도병, 제기 제작 장인, 제기 사용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성과들이 있다.<sup>2</sup> 이상의 연구들은 대체로 조선시대 전(全)시기 또는 다수의 유물이 현전하는 조선 후기를 다룬 경우가 많다. 또한 조선 초기의 제기들에 관한 연구들도 이루어졌고, 비교적 다수의 유물이 현전하는 분청사기에 대해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sup>3</sup> 이에 비해 조

2 안성희, 「16-17세기 조선 白磁祭器의 새로운 경향」, 『미술사학』 22(2008); 장경희, 「조선 후기 王室祭器 鑄成 鍮器匠 연구」, 『한국공예논총』 11(2008); 장경희, 「종묘 소장 王실제기 의 명문 분석: 제작연대와 사용처의 고증을 중심으로」, 『도시여사문화』 8(2009); 김종임, 「조선왕실 금속제기 연구: 종묘제기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77(2013); 곽현우, 「朝鮮時代 王室의 金屬祭器와 祭器圖說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5); 하은미, 「장서각 소장 <진설도>와 조선후기 왕실 제례 정비」, 『미술사학』 30(2015); 구혜인, 「조선후기 ·대한제국기 선원전 祭需와 祭器의 관계」, 『한국문화』 94(2021); 손명희, 「조선후기 선원전의 祭物과 祭器, 儀仗, 그리고 봉안 어진의 성격과 기능」, 『미술사학연구』 312(2022); 구혜인, 「조선시대 선잠제 제기의 구성과 의미: 영조 정해년 왕비친립작현례 제기를 중심으로」, 『서울과역사』 112(2022); 신혜경, 「조선 전기 왕실 제례용 백자향로의 제작과 사용」, 『미술사학연구』 318(2023); 김경중, 「조선시대 백자 '祭'명 접시의 변천: 관요 유적 출토품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319(2023) 등.

3 정소라, 「朝鮮前期 吉禮用 粉青祭器 研究: 忠孝洞窯址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23(1999); 고준희, 「양산 가야진사유적 출토 陶磁祭器의 현황과 성격」, 『동양미술사학』 17(2015); 안세진, 「조선 전기 분청사기 길례 제기의 사용 범주와 조형 변화 양상」, 『인문과학연구』 36(2023) 등.

선 초기 제기의 기종과 조형의 선별 기준이자 운영 원리인 ‘제기제도’가 정립되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물다.<sup>4</sup>

한편 역사학계나 종교학계에서는 문헌사료를 중심으로 제기 기종들을 분석해 왔다. 그동안 논의된 조선시대 제기 기종은 변(籩), 두(豆), 보(簠), 궤(簋), 이(彝), 상준(象尊), 희준(犧尊) 등으로, 조선 전기 국가전례서의 제기도설에 수록된 제기들을 중국 예서들의 제기도설과 비교하고 역사적 의미를 추출했다.<sup>5</sup> 기존 연구들은 문헌에 기록된 제기의 사용 방식과 변화 등에 대해 고찰했으나, 중국의 다양한 예기들 중 일부가 조선의 국가제사용 제기로 선별된 배경에 대한 연구는 담보 상태이다.<sup>6</sup>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국가제사용 제기들, 그중에서도 유교식 제사인 정제(正祭)에 사용된 제기들의 구성과 제작 및 사용방식이 제도적으로 정립되는 과정에 대해 파악해 보려고 한다.<sup>7</sup>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유교제사의 성격

4 이정은, 「『세종실록』‘제기도설’의 제정 배경과 조선 초기 예제 미술의 형성」, 김홍남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편), 『동아시아의 궁중미술』(서울: 한국미술연구소CAS, 2013); 구혜인, 「조선시대 왕실 제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9), 43~57쪽.

5 최순권, 「조선시대 彙尊에 대한 고찰」, 『생활문화연구』 14(2004a); 최순권, 「宗廟祭器考」, 『종묘대제문물』(서울: 궁중유물전시관, 2004b); 박봉주, 「조선시대 국가 祭禮와 尊·罍의 사용」, 『조선시대사학보』 58(2011); 박봉주, 「조선시대 국가 祭禮와 簋·豆의 사용」, 『동방학지』 159(2012); 박수정, 「조선초기 儀禮 제정과 犧尊·象尊의 역사적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60(2012) 등.

6 조선 전기 의례상정소와 허조의 제사서례도를 다룬 역사학계의 연구가 이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형주, 「許稠와 태종~세종대 國家儀禮의 정비」, 『민족문화연구』 44(2006); 강문식, 「태종~세종대 許稠의 禮制 정비와 禮 인식」, 『진단학보』 105(2008). 또 조선 초기 사전체계 정립에 영향을 준 중국 예서들을 다룬 연구도 있다. 김해영, 「조선 초기 예제연구와 『國朝五禮儀』의 편찬」, 『조선시대사학보』 55(2010).

7 조선의 국가제사는 유교 경전에 등재된 제사인 正祭와 유교경전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조선의 풍속과 인정에 의해 실행된 제사인 俗祭로 구분된다. 정제와 속제에 따라 제사의 절차, 제물, 제기, 의장 등이 달랐다. 유교경전의 예기들로 구성된 조선의 정제용 제기는 국가전례서의 제기도설에 기록된 반면, 조선의 풍속에서 사용되는 기명들로 구성된 속제용 제기는 대부분 국가전례서에 실리지 않았다.

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제후국이라는 외교적 위치를 고려한 제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선 전기의 제기제도는 나라의 중대한 의례를 거행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 조선 전기 제기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당시 예학자들은 중국의 다양한 예서들을 조사해 제기 기종을 신중하게 선별했다. 그리고 국가전례서 제기도설에 제기의 크기, 무게, 재료, 문양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등을 기록했다.<sup>8</sup>

따라서 조선 초기 국가전례서 제기도설에 실린 그림과 글 그리고 참고 및 인용된 중국 예서들을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당시 예학자들이 완성한 제기제도의 구조와 제기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제기제도를 논의하고 수립하는 과정을 살펴본다면 조선 초기 의례 문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 II. 태종 대 제기제도 설계: 의례상정소와 허조의 『제사서례도』

조선 초기는 사전(祀典)체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제기제도를 구상한 시기이다. 1392년(태조 1) 7월 17일 왕위에 즉위한 태조는 조선에 맞는 의례를 정비하고 고려의 의례를 폐지하라고 명했다.<sup>9</sup> 그리고 8월 5일 팔관회와

8 당시 조선에서 제기도설을 제작한 이유는 국가제사용 제기의 체양을 통일해 의례를 체계적으로 거행하고, 제작자와 사용자에게 정보를 숙지시켜 제기의 제작과 사용을 올바르게 하기 위함이다. 예기를 圖와 說의 체제로 정립한 것은 송대부터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북송 대 편찬되어 고려로 유입된 『宣和博古圖』, 『考古圖』등은 예기들을 '圖'와 '說'의 체제로 구성해 구체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조선은 이러한 편찬체제를 국가전례서 제기도설에 도입했다.

9 『太祖實錄』1년(1392) 7월 17일. 그러나 이미 고려시대에 유교식 제사가 행해지고 있었으

연등회를 폐지하고 8월 8일에는 예문춘추관 대학사에게 명하여 공자(孔子, B.C. 551~B.C. 479)의 신위를 모신 문묘(文廟)에 석전의(釋奠儀)를 지내도록 했다.<sup>10</sup> 이어 8월 9일에는 봉상시에 명하여 사대(四代)의 신주를 만들게 했다.<sup>11</sup>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온 힘을 쏟은 태조와 신료들이 문묘의 석전의를 최우선으로 지낸 후, 사대의 신주를 만들게 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묘의 석전의는 유교를 국시(國是)로 천명하는 상징적인 일 이자, 공식적으로 불교에서 탈피하고 유교식 예제로 향하는 대전환을 의미했기 때문에 건국 직후 문묘 석전의를 종묘 제향보다 먼저 지낸 것으로 보인다.

제사는 건국 초기 아직 불안정한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의례였다. 여기에는 자연이나 조상을 숭배하는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목적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중앙(왕실과 조정)과 지방(주현)을 의례를 통해 통합시키고 위계를 각인시키려는 정치적 목적도 내재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1392년 8월 11일에 고려의 신묘(神廟)와 주군(州郡)의 성황(城隍)이 나라의 제소(祭所)라면서 각 고을 수령에게 춘추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되, 전물(奠物)·제기·작헌(酌獻)의 예를 조정의 예제에 의거하도록 했다.<sup>12</sup> 당시 지방에 남아 있던 고려식 제사들을 지낼 수 있도록 묵인하고 고려의 유풍

---

므로 고려와 조선의 왕실제사는 서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

10 태조대 공식적인 첫 국가제사를 석전의로 지냈다. 『太祖實錄』 1년(1392) 8월 8일.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 공자를 모시는 문묘는 道統의 상징으로서 治統을 상징하는 종묘와 함께 종교적 성소였다. 박미라, 「文廟 祭祀에서의 孔子 位相 문제: 先師, 先聖, 文宣王의 尊號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53(2013), 115쪽.

11 『太祖實錄』 1년(1392) 8월 9일. 이때는 문묘가 세워지기 이전이다. 태조가 한양에 문묘와 태학을 세운 시기는 태조7년(1398)이다. 다만 태조가 역성혁명을 일으킨 뒤 두문동 72현을 탄압하여 도통중심의 문묘의례의 발전이 주춤했으나 성리학자들의 지지를 받은 태종이 실권을 잡으면서 도통중심의 문묘의례가 정비되었다. 지두환, 「朝鮮前期 文廟儀禮의 정비과정」, 『한국사연구』 75(1991), 92쪽; 박미라, 위의 글, 128쪽.

12 『太祖實錄』 1년(1392) 8월 11일.

과 조선의 신제(新制)가 부딪히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조치하면서도, 전물·제기·작현과 같은 형식만이라도 중앙의 예제에 편입시키려 한 것이다. 의례의 내용은 나중에 바꾸더라도 의례의 틀을 통일해 주현의 제사를 중앙 체제 안에 두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sup>13</sup>

조선의 예제 정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은 태종 대부분이다. 건국 초기의 예제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외교적 요소도 민감하게 고려해야 했다. 태종 초기에는 명대 예제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자 사신을 파견하여 예제를 내려 줄 것을 명조에 거듭 청했다. 하지만 명 황실은 중국의 예제를 번국(藩國)에서 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선의 요청을 거절했다.<sup>14</sup> 명 태조 홍무제가 고려의 산천제에 간섭했던 적이 있지만, 정세가 안정된 뒤에는 “다만 저의 본래 풍속을 따르라[只從他本俗].”는 불간섭의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었다.<sup>15</sup>

당시 명 황실 예서인 『대명집례(大明集禮)』와 지방 예서인 『홍무예제(洪武禮制)』가 존재했다.<sup>16</sup> 하지만 두 의례서는 조선의 국가제사용 제기를 마련하기 위해 적당하지 않았다.<sup>17</sup> 왜냐하면 제후국의 제기제도가 기록되지 않아 내용을 그대로 이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대명집례』에 황실용 제기도설이 실렸으나 제후국의 입장에서 황실 제기를 그대로 모방할 수 없었다. 그리고 명이 (조선의) 본래 풍속을 따르라

13 『太祖實錄』1년(1401) 8월 11일.

14 『太宗實錄』1년(1412) 12월 9일. 이정은, 앞의 글(2013), 266쪽.

15 『太宗實錄』12년(1412) 5월 3일.

16 홍무예제는 명 홍무년간(1368~1398)에 명 태조의 명에 따라 撰進된 각종 예서 가운데 하나로 중국 경내의 지방관이 준수해야 할 예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김해영, 앞의 글(2010), 59쪽에서 인용.

17 이정은, 앞의 글(2013), 267쪽. 명 홍무제는 산천제를 지내는 고려의 예제에 압력을 가할 때 『홍무예제』를 제시했는데, 『홍무예제』는 명 제국이 각 지방에서 거행하는 의례들을 모아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국가례를 정비하기에 마땅하지 않은 자료였다. 또한 명은 『대명집례』를 보내는 것도 거절했고 번국의 예제를 별도로 정하지도 않았다.

고 하면서, 『대명집례』를 공식적으로 보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조선 초기에는 『대명집례』를 참고하기 어려웠다.<sup>18</sup> 한편 조선 정부에서 『홍무예제』의 제기제도를 검토하기도 했으나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의 내용에 따르면, 중국을 통일한 명대 초기에 권도(勸道)로써 주현의 예제를 정비하면서, 동시에 주현의 경비를 감안해 사기[瓷]와 질그릇[瓦]을 쓰고 진설도 극히 간략하게 준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실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sup>19</sup> 조선에서는 중국 주현의 예제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홍무예제』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다.<sup>20</sup>

만약 이 시기 중국이 조선에 일정한 의례 및 제기제도를 보냈다면 조선의 예제는 중국이 설정한 일정한 틀 안에 귀속되어 전개되었겠지만, 중국이 특정 의례 외에는 본속을 따르도록 했기 때문에 조선만의 예제를 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예제를 자체적으로 정립하는 과정 속에서 조선은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고려 왕실의 예제와 조선의 습속이 습합된 형식의 독자적인 의례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이 그대로 제기제도에도 반영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태종 대 조정에서는 제후국의 기준을 인식하면서

18 『대명집례』전권이 조선에 반입되는 시점은 연산군 대에 이르러서였다. 따라서 이 책은 조선 초기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건국 초 명의 의례보다는 당·송의 의례를 따르는 분위기로 인해 조선 초기 제기제도에서 『대명집례』의 영향을 뚜렷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조선 초 『대명집례』의 일부가 조선에서 시행되고 있기는 했지만 이는 부분적인 필사·일부 반입에 한정된 것이거나 중국에서 『대명집례』를 확인한 조선 사람들의 기억에 근거해 일부 유입된 것이다. 연산군 대 『대명집례』를 국내로 반입한 이후 조선시대 제기제도에 『대명집례』제기도설의 영향이 보이기 시작한다.

19 『世宗實錄』12년(1430) 2월 19일.

20 세종조 이후 『홍무예제』는 중국 경내의 지방 단위에서 시행되는 제도로서 조선의 국가의례로 준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김해영, 앞의 글(2010), 60쪽.

새로운 제기제도를 모색하기 시작한다. 이 작업의 구심점은 태종 대 설립된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라는 기구이다. 의례상정소는 조선 전기 국가 의례를 제정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 태종 대부터 세종 대까지 운영되었다. 태종 즉위 시기부터 의례상정소를 설립한 것은 태종이 의례, 그중 길례를 가장 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이었다. 의례상정소에서는 유교의 체제를 담아내면서 제후 국의 위치를 반영한 예제를 정립하고자 했다. 이에 다양한 중국 예서를 연구하고 참고해 조선에 맞는 예제를 설계하고 길례를 완성했다. 의례상정소에서 길례 제도를 정립한 사실은 『세종실록』「오례」 서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건국 초기에 모든 사업을 일으켜 시작하매, 일이 많아서 나라의 예문이 갖추어지지 못했는데, 태종께서 허조에게 명하여 길례의 서례와 의식을 찬술하게 했으나, 다른 것은 미처 찬술하지 못했으므로, 매양 큰일을 만나면 문득 예관들의 한때에 재랑하여 정한 것을 취하여 처리하게 되었다. 임금께서 이에 鄭陟과 卞孝文에게 명하여 가례·빈례·군례·홍례 등의 예를 찬정하게 하니, 본조에서 이미 시행하던 전례와 고사를 취하고, 아울러 당·송의 옛날 제도와 명나라[中朝]의 제도를 취하였는데, 그것의 버리고 취함과 줄이고 보탠 것은 모두 임금의 결단을 받았으며, 신미년(1451)에 완성되었다. 관례도 또한 강구하였으나 성취하지 못하였다. 이미 완성된 사례(四禮)와 허조가 찬술한 길례를 아울러 실록의 끝에 부록한다.<sup>21</sup>

이 기록은 조선 건국 당시 의례 예문이 갖추어지지 못했으나, 태종이 허조(許稠, 1359~1439)에게 명하여 길례의 서례 의식을 찬술하도록 한 사실을 알

---

21 『世宗實錄』「五禮」序文.

려 준다.<sup>22</sup> 길례 정비는 왕실제사의 종류·의주·제수뿐 아니라 제기제도도 함께 설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조는 조선시대 제기의 종류과 구성을 그림과 글로 실은『제사서례도』의 편찬을 주도했다.<sup>23</sup> 1414년(태종14) 9월에 제사의주(諸祀儀註)를 올렸고, 1416년(태종16) 5월 23일에 제사서례(諸祀序例)를 상정하여 태종에게 올린다. 제사서례는 훗날 세종 대에 “영락 13년(1415)의 본국(조선)의 제사서례도(諸祀序例圖).”라고 한 것으로 보아『세종실록』「오례」의 길례서례처럼 여러 제사의 진설도 및 각종 제기, 제복, 악기 등을 도설로 실은 책인 것으로 판단된다.『제사서례도』를 상정한 해인 1416년 종묘의 제기고(祭器庫)와 재생방(宰牲房)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기를 보관하고 제사에 쓸 희생(犧牲)을 장만하는 장소도 마련했다. 즉, 허조의『제사서례도』에 실린 제기도설은 기록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작으로 이어진 것이다.<sup>24</sup>

현재『제사서례도』는 전해지지 않지만,『세종실록』「오례」서례에 기록된 “(세종대 완성된) 사례와 태종 대 허조가 찬술한 길례를 아울러 실록의 끝에 부록한다.”라는 내용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널리 알려진 바대로,『세

22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한형주, 앞의 글(2006); 강문식, 앞의 글(2008). 두 연구에 따르면, 그는 태종 대부터 세종 대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예제를 정비하고 운영을 주도한 핵심적인 인물이다. 고려 말 성리학을 들여온 학자 문성공 안향의 사위 許綏의 중손자이자 안향의 외고손자로, 權近의 문하에서 수학하면서 예학의 기초를 쌓았으며, 출사 이후 의례 관련 관서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典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당대를 대표하는 예학자로 성장했다. 태종 대 후반 예조참의와 예조참판으로 봉직하며 국가의례 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고, 세종 대에는 예조판서, 의례상정소 제조 등을 역임하면서 예제 정립을 주관했다. 특히 길례와 흥례 분야의 의례를 정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3 조선 초기 제기제도 형성에『제사서례도』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이정은의 연구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이정은, 앞의 글(2013), 265~268쪽.

24 『太宗實錄』16년(1416) 7월 27일. 1420년 태조의 신주를 종묘에 부묘할 때 태조의 신실에는 제사서례도에 기반한 종묘제기가 진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종실록』 「오례」는 조선 초기 국가전례인 오례를 최초로 집대성한 책이다. 서문에 따르면 태종 대 허조를 주축으로 한 의례상정소가 길례 제도를 마련했으나 사례(四禮, 가례·빈례·군례·흉례)는 상황에 따라 재량하여 정했다. 이후 세종이 정척, 변효문을 시켜서 전례와 고사 그리고 당·송·명대의 제도를 취하여『세종실록』 「오례」로 편찬했고, 길례서례에 제기도설을 수록했다.

따라서 서문의 내용처럼『제사서례도』와『세종실록』 「오례」 제기도설은 동일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제기제도 측면에서『세종실록』 「오례」의 제기도설이『국조오례의』에 거의 그대로 실렸고, 조선시대 제기제도로 정립되었다. 이후 편찬된 여러 국가의례서에 제구들이 여럿 추가되기는 하지만 조선 초기 제기의 전체 구성과 종류를 대체로 유지한 것으로 보아, 태종 대 허조의『제사서례도』는 조선시대 제기제도의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허조의『제사서례도』에 실린 제기들은 무슨 기준으로 선별되었을까? 기존 연구에 따르면, 조선 초기 왕실의 예제는 중국의 예제 중 당·송의 예제를 중시하여 실제 의례 정비에서 이를 많이 이용했다.<sup>25</sup> 당·송의 예제가 많이 채택된 배경에는 조선 초기 예제 전문가인 허조의 정치적 성향도 영향을 미쳤다. 허조는 기본적으로 하·상·주 삼대의 제도를 가장 이상적인 고제로 생각했고 이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이기도 했다. 그러나 삼대의 고제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문헌자료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허조는 삼대 고제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당·송의 문적을 통해 예제를 정비했다.<sup>26</sup> 또 사행을 경험한 허조는 명의 전제적 정치 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에 고제, 특히 당·송의 제도를 수록한『통전』·『문현통고』·『가례』·『의

---

25 강문식, 앞의 글(2008), 124~125쪽.

26 위의 글, 124~125쪽.

례경전통해속』을 인용하여 예제를 정비했다.<sup>27</sup> 이처럼 조선시대 정제용 제기 제도에는 다양한 중국 예서들을 참고하되, 이를 설계한 허조와 의례상정소의 예학자들의 정치철학적 관점들이 투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쉽게도 현재 『제사서례도』가 현전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세종실록』 「오례」 길례서례에 실린 제기도설을 통해 허조의 『제사서례도』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sup>28</sup>

### III. 조선 초기 국가전례서 제기도설에 인용된 중국 예서

『세종실록』 「오례」 길례서례의 제기도설은 현전하는 조선시대 제기도설 중 가장 이른 기록이다. 제기도설에는 35종에 이르는 제기들이 그림과 글로 수록되어 있다. 한 면은 대부분 4분할되어 4종의 제기가 실리며, 각 칸마다 우측에는 제기 그림[圖]이 배치되고 좌측에는 제기 정보[說]가 달리는 방식이다 (그림1).<sup>29</sup>

27 『通典』; 『文獻通考』; 『家禮』; 『儀禮經傳通解續』. 이에 대해서는 위의 글(2008)을 참고할 것.

28 세종은 허조를 비판하며 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예제 정비에 불신을 표했다. 그래서 집현전에서 오례의주를 새로이 상정하도록 명했으나 이때 정리된 오례의주가 세종의 의도와는 달리 간행되지 못했고, 결국 허조의 주도로 편찬된 국가의례가 『세종실록』 「오례」에 수록되었다. 한형주, 앞의 글(2006), 303~313쪽. 같은 맥락에서 『세종실록』 「오례」 제기도설도 세종 대에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했으나, 결국 태종 대에 허조의 설계대로 실리게 되었다고 추정된다.

29 『宣和博古圖』는 예제 정립과 방고동기 제작에 적극적이었던 송 徽宗代(재위 1100~1125) 제작된 책으로 휘종 대관 1년(1107)에 처음 편찬되고 선화 5년(1123)에 중수되었다. 휘종은 예제개혁의 일환으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고동기를 수집했고 이를 宣和殿에 소장했다. 그리고 정화 간에 내부 수장으로 『선화박고도』를 편성했고 이를 다시 선화 간에 수정하여 『중수선화박고도』를 완성했다. 수록된 기물의 종류는 총 839점에 이르고, 이를 20종으로 나누었으며, 각 기물의 도상과 명문, 크기, 용량, 출토지, 소장자의 이름까지 수록했

우선, ‘설(說)’ 부분은 제기를 선별하기 위해 참고한 중국 예서의 명칭과 함께 제기에 관한 각종 정보를 담고 있다. 그 정보란 제기의 재질, 치수, 문양, 의미 등으로, 이를 통해 『세종실록』「오례」에 실린 정제용 제기가 선별된 기준이 드러난다. 그리고 ‘도(圖)’ 부분은 제기 35종의 형태를 그린 그림이 실려 있다. 특히 『세종실록』「오례」 제기도설은 모두 붓으로 그린 필사로 완성해, 목판인쇄로 제작한 『국조오례의서례』 도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제기의 형태가 정확하고 문양이 섬세한 편이다(그림2). 『세종실록』 서문에 언술한 바, 『세종실록』「오례」 길례서례의 제기도설은 태종 대 의례상정소가 완성한 『제사서례도』와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장에서는 『세종실록』「오례」와 『국조오례의』의 제기도설에서 참고·인용한 중국 문헌의 종류와 분포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 전기 국가제사용 제기의 기종과 구성을 설계하면서 참고한 중국 예서들의 계통과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종묘제기로 인식하고 있는 제기들의 발원지를 확인함으로써, 조선시대에 사용된 국가제사용 제기들의 구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1. 『세종실록』「오례」 제기도설에 인용된 중국 예서

『세종실록』「오례」 제기도설에 수록된 제기의 종류는 35종으로, 순서대로 나열하면 변(籩)·두(豆)·보(簠)·궤(簋)·등(甄)·형(鉶)·조(俎)·비(篚)·규찬(圭瓚)·작(爵)·작점(爵坫)·포건(布巾)·계이(鷄彝)·조이(鳥彝)·가이(羆

---

다. 이용진, 「고려시대 정형청자 연구」, 『미술사학연구』 253(2007), 154~155쪽; 방병선, 『중국도자사』(파주: 경인문화사, 2012), 168쪽. 『宣化博古圖』는 기물 그림 옆에 설명을 붙이는 기록 방식을 취했다. 이러한 편집 방식이 중국 예서 및 의례서뿐만 아니라 조선의 국가전례서 제기도설에도 영향을 미쳤다.

彝) · 황오(黃彝) · 희준(犧尊) · 상준(象尊) · 착준(著尊) · 호준(壺尊) · 대준(大尊) · 산뢰(山罍) · 용작(龍勺) · 세뢰洗(罍) · 세(洗) · 우정(牛鼎) · 양정(羊鼎) · 시정(豕鼎) · 부(釜) · 확(鑊) · 비(匕) · 난도(鑪刀) · 의(辰) · 켜(几) · 연(筵)이다(그림3, 부록). 그중 제물과 제주를 담아 제상과 준소상에 올린 제기는 23종(변·두·보·케·등·형·조·비·규찬·작·점·포건·계이·조이·가이·황이·희준·상준·착준·호준·대준·산뢰·용작), 손을 씻는 용도로 사용한 제기는 2종(세뢰·세), 제물을 준비하거나 익히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제기는 7종(우정·양정·시정·부·확·비·난도), 제사 공간에 배치하는 제구들은 3종(의·케·연)이다.

『세종실록』 「오례」 제기도설에는 다양한 중국 문헌들이 참고·인용되었다. 문헌의 종류를 열거하면 『소희주현석전의도』(紹熙州縣釋奠儀圖)<sup>30</sup> · 『예서(禮書)』<sup>31</sup> · 『주례도(周禮圖)』<sup>32</sup> · 『성송반악도(聖宋頒樂圖)』<sup>33</sup> · 『삼례도(三禮圖)』<sup>34</sup> · 『사

30 우리나라 예서에 기록된 『석전의』는 『소희주현석전의도』의 줄임말이다. 이 글에서는 『소희주현석전의도』와 『석전의』의 두 명칭을 모두 사용하겠다. 『세종실록』 「오례」 길례서례의 제기도설은 송대 『宣和博古圖』부터 유래된 예기도설의 체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나, 엄밀하게 보자면 『선헌박고도』의 체제를 따른 『소희주현석전의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과 대만 학계에서는 『소희주현석전의도』가 조선시대 왕실 제기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朱彥, 「宋代禮圖的東亞傳播以『紹熙州縣釋奠儀圖』之“祭器圖說”在朝鮮的傳播為中心」, 『中國美術學院學報』(杭州: 中國美術學院, 2018) 참고.

31 일반적으로 예의 제도에 관한 책을 예서라고 부르므로, 이 글에서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진상도가 지은 예서는 꺽쇠를 붙여 『예서』라고 칭하겠다.

32 송대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책으로, 周代 禮에 관한 제도를 기록한 책인 『周禮』를 그림으로 도해한 책이다. 설명과 그림이 있어 『周禮圖』 혹은 『周禮圖說』이라고도 했다. 漢代 鄭玄의 注와 唐代 賈公彥의 疏가 있다.

33 송대 음악에 관한 책이다.

34 송대 聶崇義가 편찬한 三禮의 圖解書이다. 禮의 경전인 『周禮』, 『儀禮』를 본문만 읽어서는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으므로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립광기(事林廣記)<sup>35</sup>·『주례(周禮)』<sup>36</sup>·『예기(禮記)』<sup>37</sup>·『문현통고(文獻通考)』<sup>38</sup>·『옥인(玉人)』·『의례(儀禮)』<sup>39</sup>·『시경詩經』·『사우례(士虞禮)』·『완씨도(阮氏圖)』·『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운회(韻會)』 등이다(표1, 표2). 이 문헌들은 주로 송대에 편찬된 책으로, 『세종실록』「오례」에 수록된 제기도설은 주로 송대의 의례서 및 각종 문헌들을 바탕으로 예기도설의 도와 설을 편집하고 조합하여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35종에 이르는 각각의 제기마다 도와 설이 구성되어 있고, 설 부분에 참고 및 인용한 중국 예서들이 적개는 1건 많게는 3건 까지 있다. 그 횟수를 합치면 『세종실록』「오례」의 제기도설에는 중국 예서 16건이 총 50차례 실려 있어, 제기도설을 제작할 때 다양한 중국 예서들을 참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40</sup>

- 
- 35 宋末-元初의 陳元齋(1195~1265 전후 생존)이 엮은 생활문화 백과사전이다. 당시 민간의 생활에 관계된 자료를 방대하게 수집하고 그림을 넣어 엮은 類書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어 준 책으로 조선 초 유서로서 많이 활용되었다. 1401년 12월 명나라에 연행 간 사신들이 조선으로 가져와 진상했다는 기록이 있다[『太宗實錄』1년(1401) 12월 9일]. 『사립광기』권 11 기명류에는 부, 정, 호, 작 등의 고대 제기가 실려 있다. 관련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것. 김지선, 「원대 《사립광기》의 유통과 지식의 통속화」, 『중국어문논총』98(2020), 79쪽.
- 36 송대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책으로, 중국 周나라 왕실의 관직제도와 전국시대 각 국의 제도를 기록한 유교경전이다. 후대 중국과 한국 관직 제도의 기준이 되었다.
- 37 고대 유가의 경전으로 오경 중 하나이며, 『周禮』·『儀禮』와 함께 三禮라고 한다. 禮經이라 하지 않고 『禮記』라고 하는 것은 禮에 관한 경전을 補完·註釋했기 때문이다.
- 38 중국 송말, 원초의 학자 마단림이 저작한 제도와 문물사에 관한 저서이다. 唐대 杜佑 저작인 『通典』, 송나라의 鄭樵 저작인 『通志』와 아울러 三通이라 불린다.
- 39 중국 고대의 지배자 계급의 관혼상제 등의 예법을 기록한 책이다. 『周禮』·『禮記』와 더불어 3례라고 한다. 周初의 명신 周公의 저작이라고 하지만, 춘추시대부터 전국시대에 걸쳐서 성립된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 40 중국 고금의 예서들을 두루 살피는 방식은 제기뿐만 아니라 사전 정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김해영은 국조오례의 서문에서 “群書를 旁采하였다.”라는 대목을 언급하며, 조선왕조가 국가적 위상에 적합하고 시행상 무리가 없는 예제를 갖추기 위해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고금의 예제를 두루 살폈다고 분석했다[김해영, 앞의 글(2010), 54쪽]. 사전 정비에 참용된 예서는 제기도설에 참용된 도서와 일부 겹친다.

제기도설에 기록된 예서 중 가장 많이 인용한 문헌은『소희주현석전의도』이다.<sup>41</sup> 남송대 유학자인 주희(朱熹, 1130~1200)가 주현제사 석전의 의례규범을 세우고자 찬술한 의례서이다.『소희주현석전의도』의 제기도설 체제는『세종실록』「오례」 제기도설과 마찬가지로 그림과 설명이 함께 실렸다(그림3).『소희주현석전의도』에 실린 제기는 총 18종으로, 그 기종을 열거하면 변·멱, 두, 조, 보, 궤, 희준, 상준, 대준, 산준, 착준, 호준, 멱준소포건, 세뢰, 세, 작, 축판점(작점), 용작이다.

『세종실록』「오례」의 제기도설과『소희주현석전의도』의 예기를 비교하면,『소희주현석전의도』의 제기들 중 대부분의 ‘도’와 ‘설’이『세종실록』「오례」제기도설과 일치한다. 구체적으로『세종실록』「오례」제기도설의 35종 제기 가운데 총 15종 제기가『소희주현석전의도』의 예기도를 따라 그대로 제작되었다.『석전의』를 따르지 않은 기종 중 희준과 상준의 조형은『사립광기』를 따랐다가『국조오례의』를 편찬할 때 다시『석전의』를 따랐다. 이로써『세종실록』「오례」제기도설에 실린 제기의 50%에 달하는 조형(圖)과 제도(說)가『소희주현석전의도』를 따랐으므로,『소희주현석전의도』가 조선시대 제기제도의 종류, 재질, 양식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기의 조형과 제도를 인용한 중국 문헌은『예서』이다. 송대 진상도(陳祥道, 1053~1093)가 찬술한『예서』는, 천자(天子)의 복식(服飾)에서부터 상례(喪禮)에 이르는 여러 예제(禮制)를 모아 논의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

---

41 남송대에 벌어진 잣은 전쟁으로 인하여 복송대에 제작된 고동기 서적과 함께 이미 제작된 방고동기가 다수 사라져 새로운 禮器圖說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남송 紹興 年間에 휘종의 新成禮器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紹興製造禮器圖』를 편찬했다. 그러나 이 책이 지방까지 널리 확산되지 못하자, 남송 중기에 이르러 朱熙에 의해 다시『紹熙州縣釋奠儀圖』가 제작되었다. 주희는 이 책을 찬술하기 위해『周禮』·『儀禮』·『唐開元禮』·『紹興祭祀』 등의 문헌을 참고했고, 제례절차, 제기, 복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책의 내용은 중국 군현 석전의식의 주요 자료가 되었다.

붙인 책이다.『세종실록』「오례」의 제기도설에 인용된『예서』의 예기 기종은 총10종으로, 기종을 열거하면 등, 형, 계이, 조이, 가이, 황이, 규찬, 희준, 상준, 산뢰이다.『소희주현석전의도』의 도설을 인용한 기종들의 종류가 주로 곡식, 반찬, 희생 등을 담는 제기였다면,『예서』의 도설을 인용한 기종들은 주로 술과 물을 담는 제기들이었다. 단 희준과 상준의 경우,『세종실록』「오례」에서『예서』도설의 발(鉢) 형태로 제작되었다가『국조오례의』에서 비로소『석전의』도설의 코끼리 모양과 소 모양의 상형(像形)으로 바뀌었다.<sup>42</sup>



그림1-제기도설,『세종실록』「오례」길례  
서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그림2-제기도설 부분,『국조오례의서례』  
길례서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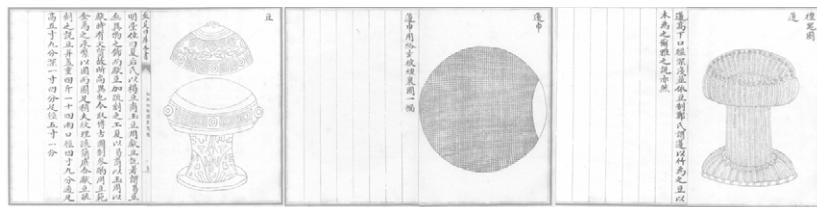


그림3-주희,『소희주현석전의도』, 예기도, 송대

42 상준과 희준의 모양이 속이 깊은鉢 모양에서 짐승 모양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당, 송제'와 '명나라 예제', '정현'의 설과 '왕숙'의 사상적 이론으로 구분해 분석한 연구도 있다. 박수정, 앞의 글(2012).

표2-조선시대 국가전례서 제기도설에 인용된 중국 예서<sup>43</sup>

구『세종실록』,『오례』제기도설 제기				조선시대 국가전례서의 제기도설 중 '도[그림]' 부분에 인용한 중국 예서		조선시대 국가전례서 제기도설 중 '설[내용]' 부분에 인용한 중국 예서	
용도	계통	순번	제기도설	『석전의』	『예서』	『주례도』	『사림광기』
찬 기 · 주 기 · 세 정 기	석 전 의  인 용	1	변	●			*석전의/ 예기, 주례, 삼례도
		2	두	●			*석전의/ 예기, 주례
		3	보	●			*석전의/ 주례, 삼례도
		4	궤	●			*석전의/ 대명집례, 주례
		5	조	●			*석전의
		6	비	●			*석전의
		7	작	●			*석전의/ 시경
		8	점	●			*석전의, 삼례도
		9	포건	●			*석전의, 삼례도, 주례
		10	착준	●			*석전의, 예서
		11	호준	●			*석전의, 예서
		12	대준	●			*석전의, 주례도, 예기
		13	용작	●			*석전의
		14	세뢰	●			*석전의
		15	세	●			*석전의
예 서  인 용		1	등		●		*예서,/ 의례
		2	형		●		*예서/ 의례
		3	계이		●		*예서
		4	조이		●		*예서
		5	가이		●		*예서
		6	황이		●		*예서
복 합		1	규찬			●	*주례도/ 문헌통고
		2	희준	●(국조)		●(세종)	*사림광기, 예서/ *석전의
		3	상준	●(국조)		●(세종)	*사림광기, 예서/ *석전의
		4	산뢰		●		*예서, 주례도
신설 내 진설 제기의 도설 출처 비율		15/25 →17/25		7/25	1/25	2/25 →0/25	석전의(60%), 예서(28%)

조 리 기 · 제 구	1	우정				성송반악도, 삼례도
	2	양정				성송반악도
	3	시정				성송반악도
	4	부			●	*사림광기
	5	확			●	*사림광기
	6	비		●		*예서
	7	난도				성송반악도, 예기, 시경, 춘추공양전
	8	의				예서, 시경, 사우례
	9	궤				주례도, 완씨도, 예서
	10	연				주례, 예서, 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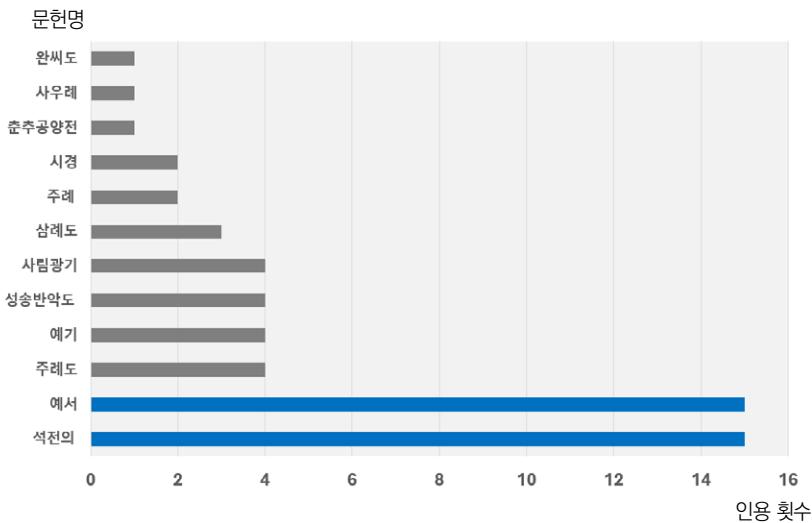
주: ●는 해당 제기의 그림이 인용된 예서, (국조): 국조오례의, (세종): 세종실록 오례,

\*는 그림을 인용한 예서

이상의 분석이 ‘그림’을 인용한 중국 문헌에 대한 내용이라면, 지금부터 『세종실록』『오례』에서 ‘내용’을 인용한 중국 문헌의 종류와 인용 횟수에 대해 살펴보겠다. 문헌의 종류별 인용 횟수를 세어 본 결과 『석전의』와 『예서』의 인용 횟수가 15회로 가장 많다. 이어 『주례도』·『예기』·『성송반악도』『사림광기』가 각각 4회, 『삼례도』가 3회, 『주례』·『시경』이 각각 2회, 『춘추공양전』·『사우례』·『완씨도』 등이 각각 1회씩 인용되었다(표3). 이를 통해 『세종실록』『오례』에서 중국 예서의 ‘내용’을 인용한 횟수인 54회 중 30회를 『석전의』와 『예서』가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세종실록』『오례』에 실린 총 35건의 제기 그림 중 25건(『국조오례의서례』의 경우 27건)의 제기 그림을 『석전의』와 『예서』의 그림에서 차용한 것을 확인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조선 전기 제기제도는 『소희주현석전의도』와 『예서』를 양축으로 삼아 구축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43 구혜인, 앞의 글(2019), 49쪽 참고.

표3-『세종실록』「오례」길례 제기도설에 인용된 중국 문헌<sup>44</sup>



## 2. 『국조오례의』 제기도설에 인용된 중국 예서

『세종실록』「오례」로 조선의 제기제도가 정립되었으나, 국가제사에 제기도설과 다른 종류의 제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예종 대까지만 하더라도 ‘구제(舊制)’라고 칭하면서 종묘의 친행과 섭행에서 은찬(銀瓚), 은작(銀爵), 동점(銅玷)을 사용했다.<sup>45</sup> 분명 『세종실록』「오례」에 찬(瓚)과 작(爵)의 재질이 동(銅)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사용한 [舊制] 은작을 사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국가제사용 제기의 제도가 허조의 『제사서례도』에 의해 마련되어 그 이후의 『세종실록』「오례」로 정립되었으나, 성종 대 이전까지는 구제와 신제가 혼합된 양상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4 구혜인, 앞의 글(2019), 48쪽 표4 참고.

45 『睿宗實錄』1년(1469) 5월 29일.

1474년(성종 5)에 『국조오례의서례』가 완성되어 반포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전 방식이 일부 유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를 끝까지 예문에 맞게 바로잡으려고 한 인물이 성종 대 우의정이자 종묘서제조(宗廟署提調)의 직책을 맡은 노사신(盧思愼, 1427~1498)이다.

가장 먼저 보이는 기록은 1490년(성종21) 종묘서제조 노사신이 제기(祭器)와 조두(俎豆)의 형태와 제도가 예문과 합치되지 않아 개조(改造)하기를 청하여 윤허받은 내용의 기록이다.<sup>46</sup> 한 달 뒤 노사신은 옛날에 쓰던 제기인 변두(籩豆), 보궤(簠簋)의 크기가 모두 예문과 다르고, 희준(犧尊)에 이(耳)가 없으며 친반(瓊盤)의 수도 모자란다면서 예문에 맞게 만드는 것을 왕에게 아뢰어 윤허받는다.<sup>47</sup>

그리고 다음 해 노사신은 성종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sup>48</sup> 우선 유작(鑰爵) 형태가 정확하지 않아 개조(改造)가 필요하고 은작(銀爵)의 크기도 맞지 않아 개조가 필요하지만, 이미 정교하게 만들었고 개조하려면 많은 공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보하지는 건의를 올린다. 이에 성종은 은작으로 개조하는 것에 공력이 듦다고 하더라도 지금 새로 제작하는 때 예문대로 맞게 제작하라고 하교한다.

이어 아뢰기를, 배향공신 작위(每位)마다 호준(壺尊)을 한 개씩 두어야 하는데 『세종실록』「오례」에 “매 위마다 호준이 하나다[每位設壺尊各一].”라고 언급하지 않고 “호준이 하나다[壺尊各一].”라고 언급하여 오해가 생겼으므로 이제부터 호준을 늘려 매 위마다 각각 하나씩 설치하거나 아니면 2~3위를 합해 하나의 호준을 설치하는 의견을 아뢴다. 이에 성종은 『세종실록』「오례」의 주(注)에 실린 내용이 그릇되었으니, 배향공신 각 위(位)마다 호준을 한 개씩 설

46 『成宗實錄』21년(1490) 윤9월 27일.

47 『成宗實錄』21년(1490) 10월 30일.

48 『成宗實錄』22년(1491) 1월 8일.

치하라고 하교한다.

마지막으로 노사신이 아뢰기를, “산뢰에 대해 고문과 오례의에 나온 바대로 종묘에서 산뢰를 쓰라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산준(山尊)을 사용한다.”라고 했다. 이에 성종은 산뢰로 개조하도록 명한다. 실제로 현재 전해지는 금속 재질의 산준은 없으나 분청사기 재질의 산준이 유물로 현전하여, 국내에서 산준을 제작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15세기 말인 1491년까지 『세종실록』 「오례」나 『국조오례의』에 실린 내용과 다른 제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노사신이 작, 호준, 산뢰의 개조에 대해 보고한 지 보름 후, 그는 성종에게 새롭게 만든 제기를 친람(親覽)하시기를 청한다.<sup>49</sup> 성종은 “허다(許多)한 제기를 어떻게 다 들여다가 친람(親覽)을 하겠는가? 매건에 각각 한 개씩만 대내로 들어오게 하면, 내가 마땅히 친람하겠다.”고 전교한다. ‘허다한 제기’라는 언급은 당시 작, 호준, 산뢰를 포함해 상당수의 제기를 제작했던 정황을 의미한다.

약 2달 후 노사신이 제기를 모두 만들었다고 왕에게 아뢰자 “대제(大祭) 뒤에 충훈부(忠勳府)에 잔치를 내려주고 아울러 공장(工匠)들을 대접하도록 하라.”라고 명한다.<sup>50</sup> 이어 사직(社稷)제기도 정결하지 않고 훼손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청하자 성종이 이를 허락한다. 이를 보아 이때까지의 제기를 신조하고 개조하는 작업은 모두 종묘와 영녕전의 제기 조성을 위한 것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로써 조선시대 국가제사용 제기제도가 태종 대 의례상정소의 『제사서례도』에서 처음 설계되고, 세종이 붕어한 이후 『세종실록』 「오례」에서 정립되

49 『成宗實錄』 22년(1491) 1월 24일. 이때 노사신은 ‘鼎鉉 以黑玉飾其兩端’이라는 고문을 참고하여 정을 제작할 때 손잡이에 옥 대신 철을 상감했다고 아뢴다. 예문에 정확하게 부합하도록 아주 세심하게 제기 제작을 감독했던 정황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50 『成宗實錄』 22년(1491) 3월 27일.

며, 성종 대 『국조오례의』에 의해 확립되는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성종 22년(1491) 종묘와 영녕전에 국한되었으나 제기 제작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성종 대는 『국조오례의』 체제에 맞추어 종묘제기를 비로소 온전하게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어 점차 중사와 소사의 제사들을 위한 제기도 마련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태종 대부터 성종 대에 걸친 기간 동안 조선 왕실에서 사용할 제기제도를 구축하고 제작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다. 태종 대의례상정소가 운영되고 예제에 능통한 허조가 당송대의 제도를 참고하여 『제사서례도』를 편찬함으로써 조선 왕실 제기제도의 기본 틀이 수립되었다. 『제사서례도』가 현전하지는 않지만 『세종실록』「오례」, 『국조오례의서례』의 제기도설과 거의 동일하며, 제기도설에 참고 및 인용된 중국 예서들을 조사한 결과 『소희주현석전의도』와 『예서』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51</sup> 이후 조선 왕실 전례서의 전범(典範)이라고 할 수 있는 『국조오례의』가 성종 대 완성되어 편찬되었고, 『국조오례의서례』 길례서례에 실린 제기도설의 구성과 내용도 『세종실록』「오례」 제기도설과 비교하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비슷하다. 그뿐만 아니라 『국조오례의서례』 제기제도가 조선 시대 동안 제기제도의 근간이 되므로, 결국 조선시대 제기제도는 『소희주현석전의도』와 『예서』를 양 기축으로 하여 조선의 관점에서 설계되고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

51 조선시대 제기제도에 『소희주현석전의도』의 영향이 커다는 사실은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된 바이다. 박봉주는 이러한 측면을 변·두라는 기종에 집중해서 살폈다. 이 연구에서는 제기제도 전반에 대해 살피고, 그중에서 『소희주현석전의도』뿐만 아니라 『예서』의 영향도 적지 않았음을 새롭게 조명해 보았다.

## IV. 『소희주현석전의도』와 『예서』의 제기 조합: 문묘례와 왕조례의 조화

이 장에서는 조선 전기 국가제사용 제기제도의 설계와 정립 과정에서 『소희주현석전의도』와 『예서』를 중요하게 인용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조선 전기 국가제사용 제기제도의 성격에 대해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조명하겠다.

### 1. 문묘례와 문치주의에 바탕을 둔 『소희주현석전의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희주현석전의도』는 중국 주현 제사 중 공자를 모신 석전의 의례 규범을 세우고자 중앙에서 반포한 서적이다. 주와 현에 해당하는 지방의 예기 제작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통해 방고기물의 제작을 지방으로 확산함과 동시에 지방 예기의 기준으로 삼고자 했다.<sup>52</sup>

조선 초기 의례상정소는 『소희주현석전의도』에서 국가제사용 제기의 핵심 기종들인 변·두·보·궤·조·작·점·포·희준·상준·착준·호준·대준·용작·세뢰·세 등의 정보와 체양을 택했다. 『소희주현석전의도』 제기도설의 체제와 제기의 조형 양식(형태·재질·크기·문양) 및 설명이 『세종실록』『오례』 길례 서례의 제기도설의 내용과 서로 정확하게 일치한다.<sup>53</sup> 따라서 조선 초기 정제 용 제기의 기본 뼈대는 『소희주현석전의도』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고 할 수

52 許雅惠, 「《宣和博古圖》的「間接」流倖: 以元代賽因赤答忽墓出土的陶器与《紹熙州縣釋奠儀圖》爲例」, 『美術史研究集刊』2002-14(2002), 5쪽.

53 희준과 상준의 경우 『세종실록』『오례』에서는 『사림광기』에서 참고하여 鉢形으로 제작했으나, 성종 대 『국조오례의서례』에서 『소희주현석전의도』를 쫓아 象形으로 교체함으로써 『소희주현석전의도』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

있다.<sup>54</sup> 이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진 배경은 무엇일까?

첫째, 조선의 국가철학을 표상하고 ‘통합과 질서’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선사(先師)로서 만세(萬世)의 사표(師表), 즉 영원한 스승의 표상으로 불렸고, 역대 최고의 성인으로서 그 누구보다 존숭(尊崇)받는 존재였다.<sup>55</sup> 공자의 가르침은 “위로는 왕도정치라는 이념을 제공하고, 아래로는 충효(忠孝)라는 신민(臣民)의 자발적 도덕관념을 통해서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사회통합의 명분을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되고 있다.<sup>56</sup> 석전은 공자에게 지내는 제사로 당시의 관념으로 온 천하가 다 같이 지내는 제사라고 여겼다. 그래서 석전은 태학과 향교뿐만 아니라 중앙과 주현을 하나로 묶어 줄 중요한 국가 의식으로 기능했다.<sup>57</sup>

조선시대 국가제사 공간은 한양뿐만 아니라 지방의 주현에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고 제사의 위계와 종류도 매우 다양했다. 국가제사 중 정제가 유교 경전에 기록된 제사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여러 물리적인 난관이 있었다. 즉, 제사 공간이 전국에 흩어져 있고, 제사 대상도 각기 다르며, 제사를 진행하는 집례자들도 달랐다. 따라서 자칫 국가의 통합된 질서를 도모하기는커녕 혼란을 자초할 수도 있었다.

비록 제사의 종류가 다양하더라도 통합과 질서를 모두 이를 수 있는 방법 은 존재했다. 의례의 절차나 물리적인 요소들을 동일하게 하고 동시에 위계

54 『소희주현석전의도』에 기반한 제기들은 조형적 차이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의 문묘제기의 구성에 반영되었고, 이는 당연한 결과였다. 그 가운데 가장 충실히 『소희주현석전의도』의 조형을 따른 것은 한국의 문묘제기였다.

55 박미라, 앞의 글(2013), 115쪽.

56 박미라, 위의 글(2013), 115쪽.

57 『世宗實錄』12년(1430) 8월 25일; 태종 대 왕세자나 고을의 관리들이 공자 사당에 지내는 절차를 공포하는 것 역시 중앙과 주현을 하나의 의례로 묶어 내는 정치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太宗實錄』14년(1414) 7월 11일.

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정한 방식(신주나 신위-제탁-준소상)의 제례공간을 조성하고, 동일한 제사 절차(삼상향-삼작)를 공유하며, 제물(희생)과 제기(변·두·작·상준·희준·산뢰 등)를 갖추되 제사의 위계에 따라 제물과 제기의 개수를 가감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왕실로부터 주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제기를 사용하되 그 수를 가감해 차등을 강조함으로써 통합과 질서를 모두 이루고자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의 통치체제에 상응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미 정리된 『소희주현석전의도』의 문묘의 제기를 중요하게 채택했고, 국가전례서의 제기도설을 통해 제기제도(재질·기종·조형·문양 등)를 정해 두고 정제용 제기의 체양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관리했다.

둘째, 문묘제기는 정치외교적 관계를 조율해 유교국가에서 통용되는 제기였다. 중국에서 태동한 유교는 동아시아의 전체 봉건사회를 규정짓는 이데올로기로 확장되었다. 유교 이념이 지배하던 전통사회에서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를 모시는 문묘(文廟)는 도통(道統)의 상징으로서 치통(治統)을 상징하는 종묘(宗廟)와 함께 종교적 성소(聖所)였다.<sup>58</sup> 동아시아 유교 국가들에서는 예악과 제기 등 일정한 격식을 갖춰 문묘제사를 지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은 명나라에 제후국의 의례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본속을 따르라는 답을 받는다. 제후국의 외폐를 의식하면서 외교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 국가제사용 제기제도의 중심축으로 문묘제기를 선택한 것은 정치사상적으로 합당하고 외교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이었다고 여겨진다.

셋째, 조선의 예학자들이 갖는 유학의식은 다른 제기들보다 문묘제기의 조형 양식을 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구심점을 만든 이는 태종 대 의례상정 소를 이끌고 제기제도를 설계한 허조였다.

『소희주현석전의도』가 조선시대 국가제사용 제기의 주된 참고서로 선택된

---

<sup>58</sup> 박미라, 앞의 글(2013), 115쪽.

것은 허조를 중심으로한 의례상정소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허조와 의례상정소의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려 후기 문묘제사의 수용과 안향의 활동 그리고 문묘 제기의 국내 유입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묘제사는 고려 후기에 수용되었다. 삼국시대부터 신라에 태학과 공자묘가 존재했고 고려 전기에는 불교를 숭상하는 분위기 속에서 국자감이 설치되고 문묘의례가 행해졌다.<sup>59</sup> 고려 후기에 공자를 성인으로 존숭했고, 이 과정에서 1303년(충렬왕 29)에 고려 말 안향이 중국으로부터 공자 및 그의 제작 70명의 초상화와 함께 제기·악기·경서 등을 구입해 와서 비치했다는 기록이 있어 고려 말 문묘 제도와 규모가 크게 정비되면서 문묘 제기 입수로 이어지게 된 것을 알 수 있다.<sup>60</sup> 그리고 고려 말에 수입한 문묘제기와 경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조선 초 왕실 제기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석전의』를 중요하게 인용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sup>61</sup> 이처럼 중국으로부터 제기나 예기도가 실린 예서를 고려로 수입하고, 이를 참고하여 조선에서 문묘제기를 국가제사용 제기의 중요한 축으로 채택한 정황을 알 수 있다.<sup>62</sup>

59 삼국시대에 신라에서 공자 숭배 시설의 존재가 확인되고 신라에 공자묘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설치 시기는 알 수 없다. 고려의 문묘 설치 시기를 보여 주는 확실한 기록은 없고 1020년(현종11)에 최치원이 先賢廟堂에 종사되고 있음을 볼 때 고려 왕조에는 국자감이 992년 혹은 늦어도 1020년대까지는 문묘가 설치되어 국가가 공자를 제사하는 시설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도요시마 유카, 「고려시대의 문묘」, 『한국사상사학』 40(2012), 414쪽; 박미라, 위의 글(2013); 지두환, 「朝鮮前期 文廟儀禮의 整備過程」, 『한국사연구』 75(1991).

60 奇大升, 『高峯續集』 권2, 雜著.

61 고려가 송으로부터 제기를 들여온 정황뿐만 아니라 고려 말 제기제도와 제물을 마련하며 관원들의 기강을 정비하는 내용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寢園署가 아뢴 내용 중 “종묘 제사는 나라의 큰일임에도 보케변두를 채우는 일과 제물을 갖추는 관원의 기강이 무너져 報本追遠하는 도리가 아니다.”라는 언급이 등장하기도 한다.

62 이와 관련해 고려 전기에도 태묘제사를 지내면서 보, 궤 등 유교식 제기를 사용했으나 이 제기들의 조형은 『삼례도』에 근거한 제기였다.

조선 초기 예조참의였던 허조는 직접 중국을 방문하여 석전의례를 실견하기도 했다. 조선으로 돌아온 후 그는 조선의 석전의식 가운데 중국과 내용이 다른 부분을 고증하여 고치도록 건의했다.<sup>63</sup> 석전제를 지내는 문묘를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허조의 태도는 무묘의 설립을 적극 반대하고 국가 사전에서 문치를 분명히 했던 입장으로도 분명히 드러난다.<sup>64</sup> 조선시대 국가제사용 제기에서 문묘제기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은 허조의 유학에 대한 뿌리깊은 신념과 선대로부터 내려온 예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직접 석전의례를 실견한 경험까지 녹여 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sup>65</sup> 이처럼 고려 후기 문묘와 문묘제기를 중시했고, 시기적으로 가까운 조선 초기에 영향을 주었다. 또 조선 초에 의례상정소를 이끈 허조가 문치의 실행과 석전의식을 중시한 결과, 『소희주현석전의도』에 실린 문묘제기가 조선시대 정제용 제기로 이식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63 『太宗實錄』 11년(1411) 4월 27일.

64 한형주, 앞의 글(2006), 306쪽.

65 『太宗實錄』 13년(1413) 4월 13일. 문묘와 석전이 매우 중요하다면 왜 조선의 국가 사전체계에서 문묘제사는 대사가 아니라 중사에 머물렀을까? 이에 대해 선행연구들에서는 다양하게 해석한다. 예를 들어, 명 가정년간 문묘개혁을 통해 문선왕이라는 명칭을 없애기도 하여 공자의 지위가 격하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봉건사회 구조에서 道統을 治通에 종속시키는 필연적인 결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즉, 문묘 석전의가 중사나 대사인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공자는 사전체계를 뛰어넘는 위상을 늘 갖고 있었다. 박미라, 앞의 글 (2013), 138~140쪽 참고 인용. 또 조선은 明과 달리 공자의 존호를 '大聖至聖文聖王'으로 유지한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정주 이후 유가의 도통을 자신들이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종배, 「조선시대 문묘 향사 위차의 특징과 그 교육적 시사: 명, 청 시기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4(2012), 17쪽; 이하나, 「韓國 文廟祭禮의 變化 樣相 考察을 통한 孔子의 位相 研究」, 『동아시아고대학』 46(2017), 219쪽 재인용.

## 2. 왕실 의례기로서의 예제를 갖춘『예서』

『예서』는『소희주현석전의도』와 더불어 조선시대 제기제도 설계에 자주 인용된 문헌이었다. 조선시대 국가전례서에서는 등·형·이(계이·조이·가이·황이)의 도설을『예서』에서 참고 및 인용했다. 이 기종을『소희주현석전의도』가 아닌『예서』에서 가져온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이 제기들이『소희주현석전의도』에 실려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등·형은 석전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기이고, 이(彝)는 왕실의 조상을 모시는 제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기였다. 당연히 이 기종들은『소희주현석전의도』에 수록되지 않았기 때문에『예서』를 참고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조선왕실의 제기는 기본적으로 문묘제사의 제기 양식을 참고해 설계했으나, 종묘제향에 갖춰져야 할 제기들은『예서』의 도설을 참고해 결합했다. 더불어『소희주현석전의도』에 실리지 않은 비·의·궤·연의 내용도『예서』에서 참고 및 인용했다.

둘째, 조선은 스스로 제기체계를 구축하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었다. 조선 왕실의 제기는 중국의 문묘제사에서 사용하는 제기와 공통점이 많지만 2차 자료인『예서』에서도 중국 황실 제사에서 사용하는 제기도 포함되어, 문묘제사와 제후국 제사의 격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이처럼『소희주현석전의도』와『예서』의 예기도설을 주로 인용한 결과 조선의 국가제사용 제기제도는 문묘 제기와 종묘제기를 융합한 제기체계를 구축하여 동아시아의 보편성과 조선의 독자성을 갖춘 제기제도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 밖에『소희주현석전의도』와『예서』에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참고하지 않고,『주례도』나『사립광기』의 도설을 활용한 기종도 있다. 예를 들어, 희준·상준·부·확인다. 그중 희준과 상준의 경우는『세종실록』「오례」와 성종 대 편찬된『국조오례의서례』의 도설이 서로 다른데,『세종실록』「오례」에서 는『사립광기』를 활용해 발형(鉢形)으로 제작했다. 그러나 성종 대『국조오례』

의서례』에서 다시 『소희주현석전의도』를 쫓아 상형(像形)으로 교체함으로써 『소희주현석전의도』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

이상으로 살펴보았을 때, 길례 정제용 제기는 문묘제기와 종묘제기라는 두 축이 융합하여 구축되었다. 기본적으로 중국 송대 편찬된 각종 예서들에 실린 예기도를 주로 참고하여 조선의 국가제사용 제기를 구성했다. 이 가운데 문묘제기가 도설로 수록된 『소희주현석전의도』를 제기제도의 기본으로 삼고, 『소희주현석전의도』에 없는 종묘 제기를 『예서』에서 참고했다. 『소희주현석전의도』와 『예서』에 모두 실린 제기일 경우 『소희주현석전의도』의 제기 도설을 우선 선별했다. 이를 통해 『소희주현석전의도』가 조선 왕실 제기제도의 1차 자료가 되고 『예서』가 2차 자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기종의 제기들은 『사림광기』 등 여러 가지 예서들에서 선별하고 융화하는 단계를 거쳐 선별되었다.

## V. 결론

---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면서 유교이념에 합당한 새로운 제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연구는 그동안 중국의 예서에 등장하는 많은 예기 도설 가운데, 왜 특정 기종과 모양의 예기가 조선시대 국가제사용 제기로 선별되었는지 그 배경을 찾아보고, 제도적으로 설계되고 정립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조선은 유교문화권 내 유교식 제기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주변국들과 다른 제기제도를 구축했다. 조선이 독자적인 제기제도를 세울 수 있던 외부적인 요인은 조선 초 명 황실이 본속을 따르라고 하면서 제기제도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지만, 내부적으로 조선 왕실이 나름의 정치철학적 관점으로 합당한 제기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주희가 편찬한 『소희주현석전의도』를 최우선으로 참고한 이유는 공자의 문묘 제기를 국내 제기제도의 근간으로 삼아 유교적 명분을 세우고, 동시에 『소희주현석전의도』의 편찬자인 주자의 권위를 통해 국가 제사의 권위도 강화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소희주현석전의도』에 실리지 않은 왕실 제기의 기종은 삼대의 예를 실은 『예서』를 통해 보충했고, 나머지 제기들을 다른 예서들에서 인용하는 방식을 통해 조선시대 국가제사용 제기제도를 완성했다. 그 결과 조선 왕실 정제용 제기제도는 문묘례용 제기와 왕조례용 제기라는 두 개의 축으로 완성되었고, 유교문화의 보편성을 추구하면서 조선 왕실의 권위를 세울 수 있었다.

조선 초기 태종 대부분 설계되고, 세종 대에 정립되어, 성종 대에 확립된 국가제사용 제기제도는 조선시대 내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대한제국기 를 지나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후 선조, 광해군, 숙종, 영조, 정조, 고종 대를 기점으로 국가제사용 제기제도에 다소간의 변화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기존 틀 안에서 발생한 변화에 한정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현재 ‘종묘제기’라고 불리는 제기의 구성이 조선 초기에 주도면밀한 설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구축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유교문화의 보편성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면서도, 조선의 상황에 최적화된 제기들을 선별해 조선만의 제기제도를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늘날 조선시대 종묘 제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아류라고 보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조선만의 독자적 문화유산으로 보기도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종묘제기로 대표되는 국가제사용 제기는 조선 초기 중국의 다양한 예서를 참고하여 문묘례와 왕조례를 조화시켜 구성했으며, 동아시아적 보편성과 조선의 독자성을 모두 내포한 제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조선 초기의 국내 상황에 집중하느라 고려시대 제기와의 상호관계나 동시기 중국 제기와

의 비교연구로 논의를 심화하지 못했다. 앞으로 조선시대 제기문화에 대해  
동시적 그리고 통시적 관점에서 연구를 심화해 진행할 것을 기약한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高峯續集』, 『國朝五禮儀』, 『士虞禮』,  
『三峯集』, 『朝鮮王朝實錄』,  
『禮記』, 『禮書』, 『文獻通考』, 『事林廣記』, 『三禮圖』, 『聖宋頒樂圖』, 『紹熙州縣釋奠儀圖』,  
『詩經』, 『玉人』, 『阮氏圖』, 『韻會』, 『儀禮』, 『周禮』, 『周禮圖』, 『春秋公羊傳』.

### 2. 논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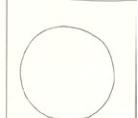
- 강문식, 「태종~세종대 許稠의 禮制 정비와 禮 인식」, 『진단학보』 105, 2008, 111~139쪽.  
고준희, 「양산 가야진사유적 출토 陶磁祭器의 현황과 성격」, 『동아미술사학』 17, 2015, 463~495쪽.  
곽현우, 「朝鮮時代 王室의 金屬祭器와 祭器圖說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구혜인, 「조선시대 왕실 제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구혜인,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선원전 祭需와 祭器의 관계」, 『한국문화』 94, 2021, 153~194쪽.  
구혜인, 「조선시대 선잠제 제기의 구성과 의미: 영조 정해년 왕비친립작헌례의 제기를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112, 2022, 87~135쪽.  
구혜인, 「조선시대 국가제사용 陶磁祭器의 종류와 성격」, 『국학연구』 51, 2023, 347~402쪽.  
김경중, 「조선시대 백자 '祭'명 접시의 변천: 관요 유적 출토품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319, 2023, 45~78쪽.  
김종임, 「조선왕실 금속제기 연구: 종묘제기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77, 2013, 133~165쪽.  
김지선, 「원대 《사립광기》의 유통과 지식의 통속화」, 『중국어문논총』 98, 2020, 63~89쪽.  
김해영, 「조선 초기 예제 연구와 『國朝五禮儀』의 편찬」, 『조선시대사학보』 55, 2010, 41~80쪽.  
박미라, 「文廟 祭祀에서의 孔子 位相문제: 先師·先聖·文宣王의 尊號를 중심으로」, 『동양 고전연구』 53, 2013, 113~142쪽.  
박봉주, 「조선시대 국가 祭禮와 孔·道의 사용」, 『조선시대사학보』 58, 2011, 171~240쪽.  
박봉주, 「조선시대 국가 祭禮와 餽·豆의 사용」, 『동방학지』 159, 2012, 175~238쪽.  
박수정, 「조선후기 儀禮 제정과 紲尊·象尊의 역사적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60, 2012, 5~35쪽.  
박종배, 「조선시대 문묘 향사 위차의 특징과 그 교육적 시사: 명·청 시기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4-3, 2012, 1~21쪽.

- 방병선,『중국도자사』, 파주: 경인문화사, 2012.
- 손명희,「조선 후기 선원전의 祭物과 祭器, 儀仗, 그리고 봉안 어진의 성격과 기능」,『미술사학연구』312, 2021, 35~74쪽.
- 신혜경,「조선 전기 왕실 제례용 백자항로의 제작과 사용」,『미술사학연구』318, 2023, 37~70쪽.
- 안성희,「16-17세기 조선 白磁祭器의 새로운 경향」,『미술사학』22, 2008, 7~41쪽.
- 안세진,「조선 전기 분청사기 길례 제기의 사용 범주와 조형 변화 양상」,『인문과학연구』36, 2023, 133~168쪽.
- 이용진,「고려시대 정형청자 연구」,『미술사학연구』252, 2006, 149~186쪽.
- 이정은,『『세종실록』‘제기도설’의 제정 배경과 조선 초기 예제 미술의 형성』, 김홍남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편),『동아시아의 궁중미술』, 서울: 한국미술연구 소CAS, 2013.
- 이하나,「韓國 文廟祭禮의 變化 樣相 考察을 통한 孔子의 位相 研究」,『동아시아고대학』46, 2017, 195~226쪽.
- 장경희,「조선후기 王室祭器 鑄成 鑄器匠 연구」,『한국공예논총』11, 2008, 1~24쪽.
- 장경희,「종묘 소장 왕실제기의 명문 분석: 제작연대와 사용처의 고증을 중심으로」,『도시 역사문화』8, 2009, 7~38쪽.
- 정소라,「朝鮮前期 吉禮用 粉青祭器 研究: 忠孝洞窯址 출토유물을 중심으로」,『미술사학 연구』223, 1999, 7~38쪽.
- 지두환,「朝鮮前期 文廟儀禮의 整備過程」,『한국사연구』75, 1991, 89~111쪽.
- 최순권,「조선시대 爳尊에 대한 고찰」,『생활문화연구』14, 2004a, 66~89쪽.
- 최순권,「宗廟祭器考」,『종묘대제문물』, 서울: 궁중유물전시관, 2004b.
- 하은미,「장서각 소장 <진설도(陳設圖)>와 조선후기 왕실 제례 정비」,『미술사학』30, 2015, 223~254쪽.
- 한형주,「許稠와 태종~세종대 國家儀禮의 정비」,『민족문화연구』44, 2006, 271~321쪽.
- 朱彥,「宋代禮圖的東亞傳播以『紹熙州縣釋奠儀圖』之“祭器圖說”在朝鮮的傳播為中心」,『中國美術學院學報』, 杭州: 中國美術學院, 2018.
- 許雅惠,「《宣和博古圖》의『間接』流倖: 以元代賽因赤答忽墓出土的陶器与《紹熙州縣釋奠儀圖》爲例」,『美術史研究集刊』2002-14, 2002.

### 3. 기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부록〉 중국 문헌의 예기도설과 조선 초기 국가전례서 제기도설 비교

	인용한 중국 문헌 S: 소희주현석전의도 Y: 예서, E:기타	세종실록 오례의 (1454)	국조 오례의서례 (1474)		인용한 중국 문헌 S: 소희주현석전의도 Y: 예서, E:기타	세종실록 오례의 (1454)	국조 오례의서례 (1474)
변 S				두 S			
보 S				궤 S			
등 Y				형 Y			
조 Y				찬 / 찬 반 E			
작 S				작 점 S			
계 이 Y				조 이 Y			

	인용한 중국 문헌 S: 소희주현석전의도 Y: 예서, E:기타	세종실록 오례의 (1454)	국조 오례의서례 (1474)		인용한 중국 문헌 S: 소희주현석전의도 Y: 예서, E:기타	세종실록 오례의 (1454)	국조 오례의서례 (1474)
가 이 Y				황 이 Y			
희 준 S Y				상 준 S Y			
착 준 S				호 준 S			
대 준 Y				산 뢰 Y			
옹 작 S				멱 S			
세 뢰 S				세 S			

	인용한 중국 문헌 S: 소희주현석전의도 Y: 예서, E:기타	세종실록 오례의 (1454)	국조 오례의서례 (1474)		인용한 중국 문헌 S: 소희주현석전의도 Y: 예서, E:기타	세종실록 오례의 (1454)	국조 오례의서례 (1474)
우 정 Y				양 정 Y			
시 정 Y				난 도 E			
비 篋 S				부 釜 E			
확 鑊 E				비 匕 E	—		
연 廷 E	—			의 衿 E	—		
궤 几 E	—						

## 국문초록

조선 초 태종 대부분부터 성종 대까지 국가제사용 제기제도를 설계하고 정립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다. 태종 대 의례상정소가 운영되고 예제에 능통한 허조가 당 송대의 제도를 참고하여 『제사서례도』를 편찬함으로써 국가제사용 제기제도의 기본 틀이 설계되었다. 『제사서례도』가 현전하지는 않지만 『세종실록』『오례』, 『국조오례의』의 제기도설을 비교분석한 결과, 조선 초기 제기제도는 『소희주현 석전의도』와 『예서』를 양 기축으로 정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제도는 조 선의 관점에서 설계되었고, 조선시대 내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조선 초기 제 기제도 정립에 『소희주현석전의도』와 『예서』를 적극적으로 참고한 목적은 문묘 례와 왕조례의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소희주현석전의도』를 통해 조 선의 국가철학을 표상하고, 통합과 질서를 도모할 수 있었다. 『소희주현석전의 도』에 실린 문묘제기는 정치외교적 관계를 초월해 유교국가에서 통용되는 제기 이므로 국가제사용 제기로 선택할 당위성이 컸다. 또한 의례상정소를 이끈 허조 가 고제를 중시하는 태도도 문묘제기를 조선시대 제기의 중심축으로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예서』는 『소희주현석전의도』에 실리지 않은 왕실용 제기들을 선택하기 위한 문헌으로 활용되었다. 여타의 문헌이 아닌 『예서』의 제 기를 선택한 이유는 조선이 왕조 국가로서의 권위를 갖춘 제기제도를 자체적으 로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로써 조선은 문묘제기와 종묘제기가 융합한 제도이자 동아시아의 보편성과 조선의 독자성을 갖춘 제기제도를 마련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투고일 2025. 7. 4.

심사일 2025. 7. 30.

제재 확정일 2025. 8. 26.

주제어(keywords) 조선 전기(early Joseon period), 국가제사(national rituals), 제기(sacrificial vessels), 허조(Heo Jo), 의례상정소(Uryesangjeongso, bureau for establishing ritual standards), 세종실록 오례(Annals of King Sejong—"Orye"(Five Rites)), 국조오례의(Gukjoo Oryeui), 소희주현석전의도(Shao-hsi chou-hsien shih-tien i-t'u), 예서(Yeseo), 문묘(Confucian temple)

## Abstract

### The Design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itual Vessel System Used for National Rituals in the Early Joseon Period

Koo, Hyein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Korea, from the reign of King Taejong to King Seongjong, considerable efforts were made to establish and develop the sacrificial vessel system used by the Royal Court. The Uiryesangjeongso (Bureau for Establishing Ritual Standards), which operated during the Taejong era, compiled the “Jesaseoryedo” by scholar Heo Jo, who was well-versed in ritual protocols and referenced the systems of the Tang and Song dynasties. This study examined the basic framework for the ritual vessel systems of the Joseon royal family. Although the “Jesaseoryedo” is not extant, analyses of the “Five Rites” in the “Annals of King Sejong” and the “Illustrated Ceremonial Rites of the State” suggest that the early Joseon vessel system was designed and established from Joseon’s perspective, considering the “Sohuizhu Xuanshede Yi” and the “Yeseo” as its two main pillars. This system stably operated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The active adoption of “Shao-hsi chou-hsien shih-tien i-t’u(紹熙州縣釋奠儀圖)” and the “Yeseo(禮書)” in the establishment of the early Joseon ritual vessel system was aimed at harmonizing the Confucian temple rites and royal ancestral rites. Through the “Shao-hsi chou-hsien shih-tien i-t’u” Joseon could embody its national philosophy and promote integration and order. The sacrificial vessels in the “Shao-hsi chou-hsien shih-tien i-t’u” were universally used in Confucian states, transcending political and diplomatic relations; hence their selection was justified. Heo Jo’s reverence for ancestral rites influenced the choice of Confucian temple vessels at the core of Joseon’s ritual vessel system. Furthermore, the “Yeseo” was used as a reference to select the vessels that were not included in the “Shao-hsi chou-hsien shih-tien i-t’u” The selection of vessels from the “Yeseo” over the other texts is viewed as an indication of Joseon’s intent to build their own vessel system. Thus, Joseon established a ritual vessel system that integrated Confucian temples with royal ancestral rites, aligning East Asian universality with Joseon’s uniqueness.